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4
----------	-----

2023. 7. 2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이육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3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2023년 7월 13일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육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충북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계약 확대와 관련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법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이상 구매 노력과 구매계획에 대한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가. 조례 제정이유

- 국가기관 및 교육청을 포함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제품 (물품·용역 및 공사) 구매 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구매목표비율 제도’ 를 시행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제정 조례안 관련하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총 6곳의 교육청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현황 〉

(2023년 06월 기준)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2021. 2.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조례	2020. 9. 25.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2017. 4. 28.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2019. 7.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2020. 8.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2023. 2. 28.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책무)**에서 교육감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조달계약 체결 시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권장하도록 규정함.

1)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안 제4조(적용 대상)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유치원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이 법령이 정하는 구매목표비율¹⁾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 보다 적극적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수립과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총구매액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액				구매비율	비고
		물품	공사	용역	계		
		2020	577,761,149	181,662,307	290,786,573		
2021	586,784,835	259,005,743	240,674,854	58,096,811	557,777,408	95.06%	
2022	737,547,467	257,416,785	296,273,787	73,866,550	627,557,122	85.43%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 안 제6조(실태조사), 안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담았고, 교육감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 제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구매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교육청 차원의 물품 공공구매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 외에도 도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과 추진이 이어진다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여가 기대됨.
- 또한,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내 학교의 수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 제품” 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 6. (생략)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

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에서 수요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 교육감의 책무 등에 대해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